

#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건설도시국

#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년 8월 11일, 백순창 의원 외 15명

나. 회부일자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(2022년 8월 25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#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백순창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,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완화,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,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 소규모

주택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

#### 다. 주요내용

-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를 포함함(안 제3조제2항, 안 제3조제3항)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(안 제3조제4항)
-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함(안 제26조제3항)
-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등이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함(안 제26조제4항)
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28조)
-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 서류를 정함(안 제29조)

### 4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황보 석)

#### 가. 조례개정 필요성

-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,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완화,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,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를 포함함(안 제3조제2항, 안 제3조제3항)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(안 제3조제4항)
-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함(안 제26조제3항)
-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등이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함(안 제26조제4항)
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28조)
-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 서류를 정함(안 제29조)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
-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,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완화,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과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,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시장·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
- 개정 취지와 내용, 관계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 2023년 지자체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마련을 지표 대상 조례임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